



제422회국회(임시회)
제2차보건복지위원회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에 관한 법적근거 마련〉

■ 김예지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6890호)

2025. 2.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오 세 일

목 차

I . 개요	1
II . 검토의견	2

I. 개요

1. 김예지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6890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김예지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4. 12. 24.
- (3) 회 부 일 : 2024. 12. 26.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어린이의 경우 뇌가 활발하게 발달하고 신체가 성장하는 시기로 재활치료 필요 시 적기에 적절한 치료를 제공함으로써 장애 발생을 최소화하고 발달 지연의 격차를 줄일 수 있음.

또한 어린이 재활 환자는 성인과 달리 성장 및 발달에 상응한 생애주기에 따른 적절한 치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하고 이를 위해 의료접근성이 높은 거주지역 기반의 재활의료 제공이 매우 중요함.

이에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지정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어린이 재활치료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3조 제7호 및 제18조의2 신설 등).

Ⅱ. 검토의견

1.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조제7호 및 제18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6. (생략) <u><신설></u> <u><신설></u>	제3조(정의) ----- -----. 1. ~ 6. (현행과 같음) 7.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이란 <u>어린이에 대한 재활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의료기관을 말한다.</u> <u>제18조의2(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 및 같은 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인력·장비 등의 기준을 갖춘 의료기관을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u> <u>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u>

현행	개정안
	<u>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u> <u>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u> <u>2. 지정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u> <u>3.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u>
제18조의2(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의 설치 등) (생략)	제18조의3(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의 설치 등) (현행 제18조의2와 같음)
제18조의3(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의 지정 등) (생략)	제18조의4(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의 지정 등) (현행 제18조의3과 같음)
제24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24조(청문) ----- ----- ----- -----.
1. 제18조의3제3항에 따른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의 지정 취소	1. 제18조의4제3항----- ----- -----
2. (생략)	2. (현행과 같음)

2. 검토의견

□ 개정안은 성장기에 있는 어린이 특성상 지속적이고 꾸준한 재활치료가 필요함에도 지역 내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이 부족하여 광역단위로 설치되어 있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및 센터에까지 찾아가야 하는 문제를 해소하고자,¹⁾(참고자료 1: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및 센터 현황)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높은 「의료법」에 따른 의원급·병원급 의료기관²⁾을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하여 조기에 적절한 재활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취지로,

보건복지부에서 2020년 10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의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임(참고자료 2: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개요).

□ 그러나 어린이 재활치료는 고비용·저수익이라는 특성상 민간이 운영을 기피할 가능성이 높은 분야로, 국가가 시설과 운영에 대한 비용을 적절히 지원하지 않는다면, 병원 및 의원급 의료기관 지정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현재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의 경우는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 인력 기준, 작업치료실, 언어치료실 등 시설 기준과 같은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지정이 가능한데,

이에 대해서는 정부의 별도 지원 없이 만 6세 미만 대상 재활치료, 언어재활치료 등 일부 비급여항목에 대해 건강보험 재정에서

1) 현재 운영 중인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및 센터는 각각 3개소로 총 6개소임.

2)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재활의학과 진료과목이 있는 의료기관 수는 의원급 5,505개소, 병원급 1,459개소임(2024년 9월 기준).

소아재활 시범수가를 적용하여 일정 부분 수익을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 따라서 개정안에 따른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안정적·지속적 운영을 위해서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일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 참고로, 어린이 재활의료기관과 유사한 목적으로 광역 단위에 설립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및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의 경우는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의 업무수행 및 업무수행을 위한 시설·인력·장비 등을 확충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경우는 지정 후 운영비 7억 5천만원,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는 지정 후 운영비 2억 4천만원 등을 연간 지원하고 있음(참고자료 3: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및 센터에 대한 예산 지원 현황).

「장애인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22조(비용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업무수행 및 업무수행을 위한 시설·인력·장비 등을 확충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2. 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의 업무수행 및 업무수행을 위한 시설·인력·장비 등을 확충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3. 장애인 건강검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4. 장애인 건강관리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5. 장애인 건강보건연구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6. 장애인 건강보건통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7. 장애인 건강보건정보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8. 장애인 건강보건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
9. 장애인 건강 및 보건 관련 전문인력의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3. 관계 부처 및 단체 의견

가. 보건복지부

- ☐ 18세 이하 어린이가 거주지역 인근에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현행법에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에 관한 근거 마련이 필요함.

문 의 처

02)6788-5502

<참고자료 1: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및 센터 현황>

구분	권역	지역	병원/센터	건립	지정	의료기관 (선정연도)	운영 여부	비고
1	충남	대전	병원	건립		충남대병원(2018)	운영 중	
2	강원	춘천	센터	건립		강원도재활병원(2019)	운영 중	
3	전북	전주	센터	건립		전주예수병원(2019)		건립 중
4	강원	원주	센터	건립		원주의료원(2020)		건립 중
5	충북	청주	센터	건립		청주의료원(2020)	운영 중	
6	경남	창원	병원	건립		창원경상대병원(2020)		건립 중
7	전남	광주	센터	건립		호남권역재활병원(2021)		건립 중
8	전남	목포	센터	건립		목포중앙병원(2021)		건립 중
9	경북	대구	센터	건립		대구동산병원(2021)		건립 중
10	경북	안동	센터	건립		안동의료원(2021)		건립 중
11	제주	서귀포	센터		지정	제주권역재활병원(2021)	운영 중	
12	수도권	서울	병원		지정	서울재활병원(2021)	운영 중	
13	수도권	경기	병원		지정	건보공단일산병원(2021)	운영 중	

자료: 보건복지부

〈참고자료 2: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개요〉

○ (사업개요)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을 지정, 개선된 건강보험수가를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비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시행 중('20~)

* (1기) 비수도권 8개 권역('20.10~'24.2, 15개소) → (2기) 전국 18개 권역('24.3~'25.12, 39개소)

○ (지원내용) 소아재활 시범수가 적용

* (수가) 만 6세미만 대상 재활치료료 30% 가산, 언어재활치료 등 일부 비급여항목 포함

○ (지정기준)

1. (대상) 필수진료과목이 재활의학과인 「의료법」 제3조제2항 '병원' 및 '의원'

2. (인력) 상근하는 자로서 아래의 인력별 최소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구 분	최소 기준		다직종 팀 구성
필수 인력	재활의학과 전문의	1인 이상	재활의학과 전문의 포함 4개 직종 이상
	물리치료사	1인 이상	
	작업치료사	1인 이상	
	간호사 *입원(낮병동 포함) 병상을 운영할 경우	1인 이상	
	언어재활사	1인 이상	
	사회복지사	1인 이상	
선택 인력	임상심리사	1인 이상	

3. (시설) 어린이전문재활치료 위한 물리치료실(운동치료실), 작업치료실, 언어치료실 구비

구 분	치료실 구분	기준	비고
필수시설	물리치료실(13종)	33㎡ 이상	어린이 재활치료를 위한 독립된 공간으로 운영
	작업치료실(10종)	18㎡ 이상	
	언어치료실(6종)	9㎡ 이상	

4. (장비) 각 치료실(물리치료실, 작업치료실, 언어치료실)에는 다음의 필수 장비를 갖추어야함

치료실 구분	필수장비
물리치료실 (13종)	하지 에르고미터, 치료용 매트, 치료용 벤치, 치료용 계단, 기능적전기자극치료기(FES), 전기자극치료기(EST), 치료용 볼, 치료용 롤, 보행기, 기립훈련기, GMFM 평가 도구(메뉴얼 포함), 보바스테이블, 호흡기능 평가도구(이상 13종 기기 모두 소아용)
작업치료	작업치료테이블, 자세유지기구(피더시트 등), 발달평가 도구: 베일리 발달

치료실 구분	필수장비
실 (10종)	평가, 덴버 발달검사, 일상생활동작 평가 도구, 손기능평가 도구, 인지기능 훈련도구/교구, 전산화인지재활치료 기기, 일상생활동작 연습기구(식사기구 등), 언어장애 전기자극치료기, 감각통합치료도구(이상 10종 기기 모두 소아용)
언어치료 실 (6종)	영유아·아동 언어발달검사 (SELSI), 취학전 아동의 수용·표현 언어검사 (PRES), 수 용·표현 어휘력검사 (REVT), 학령기 아동 언어검사 (LSSC), , 아동용 한국판 보스턴 이름대기 검사 (K-BNT-C), 우리말 조음음운 학습 및 평가도구 (U-TAP) (이상 6종 기기)

5. 어린이 재활치료 환자 수: 전문재활치료를 받은 만 18세 이하 연환자수가 100명 이상
 * 평가대상 기간 중 해당 의료기관에서 전문재활치료를 받은 만 18세 이하 연
 환자수로 산출

○ (지정 현황)

- (1기) 비수도권 8개 권역('20.10~'24.2, 15개소)
- (2기) 전국 18개 권역('24.3~'25.12, 39개소)

○ (향후계획)

- 제2기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25.12.) 종료 후 시범사업 평가, 전
 문가 자문, 시범사업 운영위원회 논의 등을 통해 본사업 전환 검토 예정

자료: 보건복지부

〈참고자료 3: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및 센터에 대한 예산 지원 현황〉

구 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국비/ 지방비 비율
건립 후 운영비 지원	- (공공재활프로그램 운영비) 1.5억원	- (공공재활프로그램 운영비) 0.6억원	국비 50% 지방비 50%
지정 후 운영비 지원	- (운영비) 7.5억원 - (공공재활프로그램 운영비) 1.5억원	- (운영비) 2.4억원 - (공공재활프로그램 운영비) 0.6억원	- (운영비) 국비 80%, 지방비 20% - (공공재활프로그램 운영비) 국비 50%, 지방비 50%

자료: 보건복지부